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 2020. 2. 17.
 개 정 : 2020. 9. 24.
 개 정 : 2021. 2. 15.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강사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임용일 현재 만65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3조(임용일) 강사의 임용일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학기 중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일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임용기간)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2. 계절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제2장 신규임용 및 재임용

제5조(교원인사위원회)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강사의 신규임용과 재임용 동의
2. 비위행위가 있는 강사의 면직 동의
3. 강사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의 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4. 그 밖의 강사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총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강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강사의 신규임용은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공영역과 교양영역을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사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강사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강사의 재임용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강사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재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사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신규채용 절차) ①총장은 담당 과목명, 배정시간,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최소 5일 이상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 경우 학문후속세대(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 등을 말한다)의 강사임용기회 보장을 위해 분야별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강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는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임용절차 간소화를 위해 면접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③임용심사위원회는 강사 신규임용 기초·전공심사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고, 총점수 순에 따라 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로 총장에게 추천한다.

④교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추천한 임용 예비 순위자를 포함한 신규강사의 임용 동의를 심의한다.

⑤총장은 최고 득점자가 임용을 포기(3회 이상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때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차순위 득점자가 임용을 포기한 때에는 그 다음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9조(신규채용 지원서류) 신규채용에 지원하는 사람은 지원자격의 확인, 기초·전공심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강사임용지원서
2. 강의계획서
3. 기타 채용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제10조(계약제 임용 등) ①총장은 임용기간, 강의시간, 강의에 따른 인건비,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 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강사를 임용한다.

②신규임용일 이후 휴직·정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다시 신규임용하거나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1년 미만으로 강사를 임용한 때에는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강사의 경우 총장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강사에게 통지한다.

④제3항에 따라 만료사실을 통보받은 강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강사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임용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를 신청한 해당 강사에 대해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고, 총장은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강사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강사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⑨강사를 신규임용하거나 재임용할 때에는 강사 임용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재임용 평가) ①제10조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20.09.24.>

1. 강의계획서, 성적입력 등 기한 준수 여부
2. 강의계획(작성)의 적절성
3. 수업품질 개선보고서(CQI) 작성 여부
4. 강의평가 결과
5. 휴·보강 준수 여부
6. 대학 지정 및 법정 의무교육 참여(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청렴교육 등)

②제1항의 항목별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09.24.>

제12조(면직사유 등)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규채용, 재임용 평가 시 허위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 성적입력 등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소속 학부(학과, 전공)이 폐지된 경우
5.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6. 품위손상의 정도가 심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 기타 임용계약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11조에 의한 재임용 평가 결과 조건부 재임용이 연속 2회 또는 누적 3회일 경우 <신설 2020.09.24.>

제13조(당연퇴직)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사망한 때
2.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강사. 이 경우 만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3.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정직 등을 포함하여 총 3년이 도래한 때
4. 재임용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09.24.>

제3장 처우 및 의무

제14조(강의시간) 강사는 학기별로 매주 6시간 이하의 강의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조건 및 복무 등) ①강사는 본교의 교육이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02.15.>

③강사는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강사는 담당 교과목을 강의하여야 하며, 교육 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교육지도를 위하여 대학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수업과 관련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CQI 보고서 등) 작성

2. 수업시간 내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상담 및 지도

3. 대학 지정 및 법정 의무교육 이수

4. 기타 총장이 부여하는 교육과 연계되는 사항

⑤퇴직금은 교육부의 강사 처우개선 사업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총장은 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2.15.>

제16조(휴직) ①총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②휴직기간은 임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세부사항) 총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강사는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시간강사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9년 9월 1일 이후 임용된 강사는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5조의 ②항, ⑤항은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19.8.1.)에 의해 신규임용된 강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재임용 심사 기준

항 목		배 점	평가기준										
1-가. 강의계획서 입력 기한 준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기간 내 담당한 교과목에 대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교과목을 기한 내 입력 시 5점 - 기한 내 미입력 교과목이 1개 이상인 경우 2점 										
1-나. 성적 입력 기한 준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기간 내 담당한 교과목에 대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교과목을 기한 내 입력 시 5점 - 기한 내 미입력 교과목이 1개 이상인 경우 2점 										
1-다. 강의계획서(작성)의 적절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기간 내 담당한 교과목에 대해 평가 ■ 강의계획서 작성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교과목의 작성 지침 준수 시 10점 - 미준수한 교과목이 1개 이상인 경우 4점 										
2. 수업품질 개선보고서 제출 여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기간 내 담당한 교과목에 대해 평가 ■ 중간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자기분석보고서 제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교과목을 기한 내 제출 시 10점 - 기한 내 미제출 교과목이 1개 이상인 경우 4점 - 학생 미참여로 인해 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5점 부여 										
3. 강의평가 결과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기간 내 담당한 교과목에 대해 평가 ■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5점 만점)의 평균값으로 평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4.7 이상</td> <td>45 이상 47 미만</td> <td>43 이상 45 미만</td> <td>40 이상 43 미만</td> <td>4.0 미만</td> </tr> <tr> <td>55점</td> <td>45점</td> <td>35점</td> <td>25점</td> <td>15점</td> </tr> </table> 	4.7 이상	45 이상 47 미만	43 이상 45 미만	40 이상 43 미만	4.0 미만	55점	45점	35점	25점	15점
4.7 이상	45 이상 47 미만	43 이상 45 미만	40 이상 43 미만	4.0 미만									
55점	45점	35점	25점	15점									
4. 휴·보강 준수 여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기간 내 담당한 교과목에 대해 평가 ■ 휴·보강계획서 제출 현황을 기준으로 임용기간 내 전체 교과목에 대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강이 없거나, 휴강 후 보강을 한 경우 10점 - 휴강 후 1개 교과목이라도 미보강 시 0점 										
5. 법정 의무 교육 참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기간 내 교내에서 진행한 법정 의무교육(4대 폭력예방교육 등) 참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참여시 3점 - 2회 이상 참여시 5점 										
가산점	6. 교육역량 개발 참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에서 진행하는 교수법 향상과 관련한 특강, 프로그램 등 참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이상 참여 시 5점 										
합 계		100											

※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이 가능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강의개선보고서 제출과 교수법 향상 관련 교육 1회 이상을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재임용을 할 수 있음(단, 최초임용 이후 조건부 재임용이 연속 2회 또는 누적 3회일 경우 재임용이 불가함)